

# 環境經營監査制度의 內容

李 鍾 永\*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環境管理制度의 發展
  - 1. 美 國
  - 2. 국제상사위원회(ICC)
  - 3. 유럽聯合의 會員國
  - 4. 國際標準規格
- III. 環境經營監査制度의 內容
  - 1. 制度의 意義
  - 2. 參與方式과 對象
  - 3. 企業內部的 監査節次
- IV. 맺음말

\*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法學博士,

## I. 들어가는 말

환경오염의 주체는 개인을 포함하는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로 대별할 수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양을 기본요소로 하는 환경은 현대국가에서 개인과 가정에 의하여 많은 오염이 유발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통계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 많은 부분에서 환경오염의 실질적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문제의 개선은 많은 점에서 기업의 환경보호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제품생산과 운영단계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가 생산비용과 운영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환경보호에 보다 적게 투자하기를 원할 것이다. 즉 영리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인 기업은 환경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투자를 가능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익과 갈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보호는 결국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통제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실현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와 환경과의 갈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경제와 환경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경영체제는 환경관리주의<sup>1)</sup>에 의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적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법정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의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하고 있는 『환경친화성기업지정제도』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규정은 바로 환경경영체제에 속한다.<sup>2)</sup>

1) 환경관리주의는 풍요한 소비생활, 도시화·산업화·환경적대적 산업구조에 환경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나 서구적 문화체계를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환경법의 미비, 기업의 환경침해에 대한 행정의 집행결함,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을 환경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환경관리주의는 환경위기를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형없이 부분적 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시각을 제도화한 것이 환경경영감사제도와 ISO 14001(환경경영체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경영감사제도와 ISO 14001은 환경관리제도로 명명되고 있다(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구동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 문학과 지성사, 1996, 44면 이하).

2) 環境親和企業指定制度는 1995년 4월 14일 『環境親和企業運營規程』이 환경부 예규로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법의 집행결함은 환경법이 해결하여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의 집행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에 의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나, 개별 기업의 모든 행위를 감독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동원과 행정비용의 증대라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러한 환경법상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제도가 환경감사제도 또는 환경경영·관리제도이다. 즉 환경법의 준수를 기업 스스로 하도록 기업내부적 경영시스템을 심사하게 하는 제도가 환경경영·관리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경영에 환경심사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환경보호장치를 도입하고 기업의 내부심사로 일반대중에게 기업행위의 환경정향적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경영상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動因을 부여받아서 소재지에서 기업의 환경보호경영의 방침을 수립하고, 환경프로그램과 환경경영체제를 개발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포괄적인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위한 인적, 조직적 그리고 기술적인 모든 조치는 환경경영체제(Umweltmanagementsystem)에 속한다. 기업내부의 이러한 환경경영체제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 객관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가 環境經營審査(Umweltbetriebsprüfung)이고, 이는 외부의 심사원이나 내부의 종업원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환경경영체제는 사실 경영학의 품질경영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품질경영의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3월 유럽연합위원회는 이사회에 유럽연합법의 환경경영심사체제에 영리기업의 임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명령제정을 제안하고,<sup>3)</sup> 1993년 6월 29일 유럽연합이사회는 환경관리과 환경경영심사에 영리기업이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럽연합명령을 제정하였다.<sup>4)</sup> 그 규정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은 유럽연합의 환경관리-명령의 독일내의 집행을 위한 법

---

제정됨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하여 1997년 1월 31일 『環境親和企業指定制度運營規程』에 관한 告示가 제정되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우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代替하고, 정기적 지도와 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융자우선 및 각종 표창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3) ABIEG Nr. C 76 S.2 v.27.3.1992.

4) Gesetz zur Ausführung der Verordnung(EWG) Nr.1836/93 des Rates vom 29.6.1993 über die freiwillige Beteiligung gewerblicher Unternehmen an einem Gemeinschaftssystem für das Umweltmanagement und die Umweltbetriebsprüfung(Umweltauditgesetz-UAG) vom 7.12.1995, BGBlI, S.1591.

를이라고 할 수 있는 環境監査法(Umweltauditgesetz)을 제정하여 1995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하였다. 1995년 12월 23일과 29일에 일부는 연방정부에 의하여,<sup>5)</sup> 다른 일부는 연방환경부에 의하여<sup>6)</sup> 3개의 집행명령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의 환경경영심사법률과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한 3개의 명령제정으로 유럽연합의 환경경영심사명령의 실행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의 환경경영감사명령은 유럽공동체조약 제189조제2항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고, 1995년 4월 1일부터는 직접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환경경영감사제도는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 유럽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원국 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특별한 국내법에 의한 편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7)</sup> 그러나 유럽연합명령은 회원국가에게 환경경영시스템의 집행력과 가능성이 작용할 수 있는 요건을 회원국의 법률로 제도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회원국가에게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환경평가사의 자격허가와 이들의 업무활동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유럽연합명령 제16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환경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격허가와 감독시스템의 정립을 위하여 회원국가에게는 21개월의 기한이 주어졌다(명령 제6조 제2항). 이 기한은 1995년 4월 13일에 만료되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가에게 부여된 또하나의 규범정립과제는 환경경영심사에 참여하는 심사된 소재지의 등록부를 관할하는 기관의 확정이다. 회원국가에게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허용된 기한은 12월이었다(명령 제18조제1항).

이 글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실행되고 있는 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인 환경경영감사제도를 소개하여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環境親和企業指定制度』의

5)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Zulassung von Umweltgutachtern und Umweltgutachterorganisationen sowie zur Erteilung von Fachkenntnisbescheinigungen nach dem Umweltauditgesetz(UAG-Zulassungsverfahrensverordnung: UAGZVV) vom 18.12.1995, BGBl. I S.1841.

6) Verordnung über die Beleihung der Zulassungsstelle nach dem Umweltauditgesetz(UAG-Beleihungsverordnung: UAGBV) vom 18.12.1995, BGBl. I S.2013; Verordnung über Gebühren und Auslagen für Amtshandlungen der Zulassungsstelle und des Widerspruchsausschusses bei der Durchführung des Umweltauditgesetzes(UAG-Gebührenverordnung: UAGGebV) vom 18.12.1995, BGBl. I S.2014.

7) G.Lübbe-Wolff, "Das Umweltauditgesetz", NuR 1996, 217(218) 참조.

발전에 시사점을 줌으로써 보다 개선된 환경관리제도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관리제도의 역사적 발달을 언급하고, 國際標準化機構(ISO)에서 도입하여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환경경영체제(ISO 14001)에 관한 논의도 이 글이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은 유럽연합의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내용에 두고, 개별적인 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II. 環境管理制度의 發展

### 1. 美 國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업의 연말결산에 지나치게 적게 평가되고 있는 환경손해 배상의 위험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환경심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환경관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sup>8)</sup> 또한 미국에서 기업내부적 환경심사프로그램이 발달하게 된 또다른 동기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환경법이 엄격하게 개정된 데에 있다. 특히 위해성분의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기업내부의 환경심사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법률내용이 기업내부에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미국의 기업들, 특히 화학회사들은 자기기업에 고유한 環境審査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sup>9)</sup>

이와 같은 시점에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준수를 기업내부적으로 심사하고 관리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계획을 1979년에 포기하고, 환경심사를 임의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Superfund<sup>10)</sup>는 독성분의 배출과 독성폐기물의 발생을 행정청에 신고할

8) J.Scherer, "Umweltaudits-Instrument zur Durchsetzung des Umweltrechts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NVwZ* 1993, 11.

9) J.Scherer, *aa.O.*, 11ff.(12); 미국의 경영실무상 환경심사의 발달에 관하여는 Steger(Hrsg.), *Umweltauditing*, 1991; Prizna, *Environmental Law Reporter* 20 (1990), 10179 참조.

10) Superfund는 과거에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장소를 복구할 목적으로 제정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였다.<sup>11)</sup> 1988년 이래로 약 2만개의 기업이 매년 이에 합당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유해물배출은 부분적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유해물배출에 대한 대외적 공포는 바로 그 기업의 環境親和的 經營을 일반대중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환경법위반을 기업내부에서 감독하고, 기업 스스로 有害物 排出減少計劃을 도입하게 되었다. 행정청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해물 배출감소조치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청은 기업에 의하여 배출되는 유해물의 종류와 양에 관한 데이터를 1963년에 제정된 大氣淨化法(Clean Air Act)<sup>12)</sup>을 1990년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이유로 활용하였다. 대기정화법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환경보호청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독성분과 대기오염성분의 약 80%는 기존의 법률규정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13)</sup>

미국에서 환경심사에 관한 입법화는 聯邦보다는 州차원에서 우선 실행되었다. 미국의 뉴저지주의 법률(Environmental Clean Up Responsibility Act: N.J.A.C. 제7조: 26B)은 위험성분을 사용한 산업시설물의 판매에 대하여 유해성과약조치와 개선조치를 받게 하였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Connecticut주와 Illinois주의 법률에도 있었다. 環境審査命書은 이미 1988년 미국과 캐나다의 화학협회(CNA)에 의하여 수용된 Responsible Care Pro-

---

된 법률이다. Superfund의 정식명칭은 미국의 연방법률로서 환경복구·배상 및 책임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다. CERCLA는 정부가 유해물질로 오염된 장소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Superfund라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CERCLA는 Superfund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金炯辰,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환경법연구』 제19권 (1997), 16면 이하 참조.

11) 1986년의 Superfund Amendment and Reauthorisation Act(SARA) 제3장, Toxic Chemical Release Inventory. Reporting package, EPA/560/4.91-001, Januar 1991.

12)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은 규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이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을 확정하고, 대기전체의 오염물질총량에 관한 규제기준인 전국대기상태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과 개별발생원인에 대한 규제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崔昇煥, “美國의 環境政策과 一方的 環境立法”, 『환경보호와 국제법 질서(이장희 대표집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63면 참조.

13) G.Feldhaus, “Umwelt-Audit und Betriebsorganisation im Umweltrecht”, in: J.Kormann, *Umwelthaftung und Umweltmanagement*, S.11 참조.

gramm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도 발전의무라는 표제하에서 인정되었다. 환경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은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학협회의 프로그램에는 일반대중과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험에 대하여 알리고, 그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생산과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기업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관리와 환경심사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발상된 環境經營監査制度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기업내부적 검사에만 만족하였다. 다음에서 소개될 유럽연합의 환경감사제도와 같은 외부의 독립된 環境評價士에 의한 감독은 도입되지 않았다.<sup>14)</sup>

## 2. 국제상사위원회(ICC)

국제상사위원회는 '持續 가능한 發展<sup>15)</sup>을 위한 産業界 憲章'을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環境經營原則 16가지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스스로 환경경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유럽에서 環境監査의 발단은 목표, 동기 및 방법에서 국제상사위원회의 環境監査에 관한 보고서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른 환경심사는 작업단계에서 이미 확정하고 있다. 물론 이 안은 유럽연합의 환경감사안과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국제상사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델에 따른 환경감사는 명백히 기업 자체의 책임하에 있고 기업내부적 목적에만 기여하는 절차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달과 병행하여 생산경영에서 品質保證體制(Qualitätssicherungssystem)의 설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명령의 제정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였다.<sup>16)</sup>

14) B.Peter/G.Both/B.Gebers, *Öko-Audit - Leitfaden und Arbeitsmaterialien zur Zertifizierung*, S.5f. 참조.

15) 구동완(전게서, 29면, 주 3)는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용어는 흔히 지속가능한 개발로 번역되지만 '자연을 개척하여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의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사물이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발전'이라는 용어가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와 더 잘 어울리는 명사"라고 하고 있다. 필자도 개발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최소한 자연의 파괴를 미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발전이 보다 적합한 용어로 생각한다.

### 3. 유럽聯合의 會員國

환경경영감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유럽연합국가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만 환경경영감사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명령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대기오염성분의 배출 및 폐수배출과 관련하여 자체심사절차를 규정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업가협회(Arbeitergebersverbände)가 환경경영감사제도를 알고, 1989년의 환경보호-행동계획에 내부적 환경경영체제(System des internen Umweltmanagement)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목적은 행정청에 의한 기업의 환경통제를 줄이는 데에 있었다. 그 중의 일부인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환경관리체계, 환경성명 그리고 환경관리심사는 유럽연합의 환경심사명령과 아주 유사하였다.

### 4. 國際標準規格

#### (1) 品質經營體制

기업내부적 심사를 포함하는 경영조직의 규율에 관한 선구자는 品質認證體制에 관한 규범인 ISO 9000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이 규격은 생산과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한 자체조직으로써 상향적 균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격은 기업중역의 책임소재, 책임의 확정, 권한과 권한위임, 경계영역에서 조종과 조화를 위한 조치, 진행절차, 교본에 기록, 내부심사에 대한 정기적 심사, 시설물의 감독과 정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동기부여 등을 규격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영국의 標準機關(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은 특별히 환경보호부분에서 경영조직에 관한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에 관한 BS 7750을 개발하여 1992년 3월 16일에 시행하였다.<sup>16)</sup>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서밋트’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아젠다 21’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인 회의(BCSD)’가 환경경영에 관한 ISO 규격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16) 이와 유사한 과정은 소위 전체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유럽연합의 제도도입에도 있었다.

17) 1993년 9월 1일의 시험단계가 진행하기 전에 규범의 보충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규정내용은 획득한 경험을 참조하여 유럽연합의 환경심사명령에 맞추었다.



## (2) 環境經營體制

### 1) 發 達

ISO 규격도 환경관리체계와 환경심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제정할 목적으로 규정화작업을 하였다. 1993년 6월초에 토론토에서 환경관리에 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Environmental Management: TC 207)를 구성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5개의 하부위원회를 두었다. 제1분과위원회(SC 1)는 환경경영체제, 제2분과위원회(SC 2)는 환경심사, 제3분과위원회(SC 3)는 환경마크, 제4분과위원회(SC 4)는 환경성과평가, 제5분과위원회(SC 5)는 전과정분석, 제6분과위원회는 용어와 정의를 담당한다.<sup>18)</sup> ISO 14000시리즈는 1996년부터 2000년대에 걸쳐 점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나, 완료되는 시점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는 새로운 작업항목이 지속적으로 추가 제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ISO 14000시리즈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건설업 등 모든 사업분야의 조직체가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관리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하도록 유도하여 ‘환경보호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만들기’와 ‘세계 각국의 공평한 역할분담’을 위한 도구로서 國際規格이다. 이는 외부의 공인된 환경인증기관에서 규격 ISO 14001에 따라서 심사한 후에 인증하여 주는 국제환경인증규격이다. ISO 14000시리즈는 기존의 사후처리(End of Pipe)라는 환경관리개념에서 전과정평가 차원의 관리개념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 2) 環境經營體制

ISO 14001은 1996년 9월에 정식으로 제정되어 외부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표명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관한 규격이고, 구축된 환경경영체제는 심사·인증의 대상이 된다. ISO 14001은 BS 7750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차례와 용어의 표현에서 상이하다. 이는 품질통제서클(QC서클)인 計劃

18) ISO/TC 207 전체회합은 제1회 캐나다의 토론토에 이어, 제2회 1994년 5월 가나의 콜드코스트, 제3회 1995년 6월 노르웨이의 오슬로, 제4회 199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7년 4월에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19) 金峻漢, “國際環境規制와 韓國經濟”, 『環境保護와 國際法 秩序』,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323면 참조.

(plan)-實行(do)-檢討(check)-措置(action)의 품질관리과정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어서<sup>20)</sup> 전체구성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즉, 환경경영체제는 기업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하는 17개의 주요 요구와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경영자는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최상위 개념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환경방침을 수립하고(plan), 기업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수립된 방침을 실행하고(do), 이 실행에 대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진단활동을 하고(check), 그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외부에 공포하고, 제3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action)를 받도록 하는 4단계의 기본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ISO 14001은 최고경영자가 환경방침을 정하고(4.1), 이에 따라서 조직은 환경측면(4.2.1)과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4.2.3), 이를 위한 환경경영추진계획(4.2.4)을 수립한다. 다음 단계는 실시 및 운영이다(4.3). 여기서는 우선 조직의 구조와 책임을 확정하고(4.3.1), 필요한 경우에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4.3.2). 그리고 환경측면에 있어서 조직의 내·외부와 정보교환을 하고(4.3.3), 여기서 확보한 정보를 문서화하여(4.3.4) 이를 관리한다(4.3.5). 운영관리단계에서 공급자와 계약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류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4.3.6). 사고 및 비상시의 대비 및 대응책을 마련한다(4.3.7). 이제 점검 및 시정조치단계(4.4)에 들어간다. 조직은 감시와 측정에 관한 문서화한 규정류를 제정 유지하고(4.4.1), 부적합

20) 품질경영은 원래 관리활동이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관리기능인 계획-실행-검토-시정의 관리과정을 거친다. 즉, 첫째, 계획은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에 따라 기업내부적으로는 제조능력과 외부적으로는 소비자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품질표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제품의 목표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품질표준규격 내지 품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조현장에 넘겨 준다. 둘째, 실행은 계획된 품질에 적합한 제조품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의 설계 내지 공정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적합한 기계와 설비를 구비하고, 작업표준과 제조표준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검사는 제품의 제조단계, 완성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제조품질 내지 사용품을 목표품질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검토하는 작업이다. 설계, 구매, 제조 등의 과정에서 특정요인들을 미리 설정된 표준에 맞추어 검토하거나, 완제품의 품질, 원가, 납기 등 제조결과를 규정에 맞추어 검토하는 업무이다. 넷째, 시정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량품 및 클레임의 발생원인을 밝혀서 시정조치할 점이 있으면 이들 정보를 설계, 구매, 제조단계에 피드백시켜 품질의 방침이나 목표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소비자의 요구조건을 품질계획과 실행단계에 피드백시켜 설계품질 내지 제조품질의 개선을 도모하는 작업이다(박우동, 『품질경영 -TQM전략·SQC기법-』, 1996, 법문사, 66면 이하 참조).

의 처리와 조사 그리고 시정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책임자와 그것을 수행하고 완료하는 담당부서를 정한다(4.4.2). 조직은 환경기록의 항목을 확실하게 하고 보관하며, 처분하는 규정류를 제정하여 유지한다(4.4.3). 이러한 조직의 체제에 대하여 조직은 내부환경감사를 스스로 실시한다(4.4.4). 마지막 단계로 최고경영자는 정기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검토한다(4.5). 조직은 이와 같은 환경경영체제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게 된다. 이러한 단계는 ISO 14001 규격의 본문과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ISO 14001은 여러 지역의 모든 종류와 규모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방침과 환경목표를 책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 그 준수상황을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다. ISO 14001은 제3의 기관에 의한 심사·인증이 필요한 절차서와 지침으로 이용하는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ISO 14001의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심사되는 요소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활동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3) 環境審査

환경심사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의외에 법규준수 및 환경경영의 성과에 대한 심사, 기업의 환경보고서에 대한 심사, 부지 및 설비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심사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심사방법과 절차, 심사자의 자격요건 등도 규정하고 있다. 환경심사는 환경경영체제의 개별사항에 대한 검토(check)기능이며, 동시에 환경경영체제 전체의 검토기능이기도 하다. 이로써 환경경영체제수준의 고도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環境審査는 환경경영체제의 확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환경경영체제가 구축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경영체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 즉, 기업으로서 새롭게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사업장이 설립되거나, 기존 사업장이 사업내용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활동의 실태조사 및 환경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직의 구축(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환경심사업무의 중점은 구체적인 현장심사에 있어, 심사의 목표수준과 심사대상 범위의 설정, 이에 따른 심사방법과 평가기준의 선택을 위하여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환경보전·관리수준을 현장에서 실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환경심사를 이

용한 차후의 환경경영체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경경영체제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의 중점이다.

ISO 14010, ISO 14011, ISO 14012는 환경심사의 원칙, 순서, 환경심사원의 자격요건 등의 지침이다. 이외에 환경심사에 3개의 새로운 작업항목이 제안되고 있다. ISO 14013, ISO 14014, ISO 14015가 신작업항목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6월 리우회의에서 ISO 14013과 ISO 14014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ISO 14015는 그 필요성에 따라 계속 심의되고 있다.<sup>21)</sup>

#### 4) 環境마크(환경라벨링)

환경라벨링의 목적은 사용방안에 통일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시장원리에 합치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하게 하며, 제품사용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 및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 또한 環境親和性을 광고로 허용하는 문제와 상품에 부착하는 환경마크에 대하여서도 標準化를 시도하고 있다. 세계에는 이미 많은 라벨이 존재하고 그 운영에 따라서는 무역장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각 국가의 관심은 환경경영체제에서 환경라벨로 옮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SO 14020은 환경라벨과 선언에 관한 기본원칙과 환경라벨의 타입을 정하고 있다. 환경라벨의 인증타입은 자체선언에 의한 환경주장, 전과정분석(LCA)을 기본으로 한 지표를 결정하여, 제품에 관련된 환경부하량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형태 그리고 제3자 인증에 의한 환경라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3자 인증에 의한 라벨방식은 독일의 블루엔젤을 예로 들 수 있다.

ISO 14021, ISO 14022, ISO 14023은 기업자체의 환경보호선언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규격화하고 있다. 기업이 실시하는 환경에 대한 자기선언은 마케팅에서 심벌, 제품, 기술자료, 선전광고 등에 이용된다. 기업 자체 환경보호선언의 국제표준 심벌은 소비자의 혼란, 산업계나 개발도상국의 사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새로운 작업항목으로 제안된 ISO 14025는 정량적 분석에 의한 제품의 수

---

21) ISO 14010시리즈인 환경심사에 관한 내용을 현행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56호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명주기평가(LCA)를 기본으로 한 지표를 결정하여, 제품에 관련된 환경부담량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s의 리포트 카드가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규격이 무역장벽에 이용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 5) 環境成果評價

환경성과평가(EPE: Enviromental Performance Evaluation)는 ISO 14031과 관련된다. 환경성과평가는 기업활동의 성과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環境成果指標를 통하여 측정, 분석,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관리와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기술적 규격이다. 환경성과평가는 경영분야, 운용분야, 환경여건분야와 관련하여, 조직이 설정한 기준의 달성도를 정성적·정량적인 環境成果指標(EPI: Enviromental Performance Indicator), 環境指標(EI: Enviromental Indicator)를 사용하여 측정·분석·평가·보고의 과정을 규격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환경감사가 회계감사처럼 회계연도 등 일정한 기간동안 기업이 설정한 환경관련 법규정과 환경보호방침의 적합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하여, 환경성과평가는 지속적으로 정하여진 실제기준으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목표에 대한 실행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sup>22)</sup>

#### 6) 製品壽命週期評價

제품수명주기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원자료의 채취에서부터 생산·유통·판매·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제품의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부하가 어느 정도이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 등과 같은 원칙·방법 등을 가이드 라인으로서 책정하여 제품의 환경영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이다.

### Ⅲ. 環境經營監査制度의 内容

지금까지 알려진 환경경영감사는 일부는 내부효과를 가지고, 일부는 외부효과를 가지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내부효과와 외부효과와의 결합에서 나온다.

---

22) 김준한, 전계논문, 325면 참조.

그러나 環境監査의 형태는 서로 상이하다.<sup>23)</sup> 첫째는 순수한 내부효과를 가지는 환경감사(순수한 내부경영상의 이행장치), 둘째로 私法的 외부효과를 가지는 환경감사(기업매각시에 위험성판단), 셋째로 행정청에 제한적 외부효과를 가진 환경감사(미국, 손해배상위험), 넷째로 행정청과 공공에 외부효과를 가지는 환경감사(BS 7750; 유럽연합의 환경심사명령) 등이 있다.

유럽연합의 명령에 의한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도입이전에 이미 기업내부적인 환경경영감사에 관한 기본적인 발상이나 실행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이 있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체계적,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기업내부적 자체감사가 실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환경감사의 실행에 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산업국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州의 법률에서 위험성분을 사용한 산업시설물의 판매에는 위험물의 함유실태와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주의 Victoria주 법률(Environmental Protection (General Amendment) Act 1989)은 환경법상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감사를 자체적으로 실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다.<sup>24)</sup>

유럽연합의 환경경영감사제도는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하여 20년동안 환경정책에 전환점으로 표현되는 1993년 2월 1일의 유럽연합이사회에 의하여 승낙된 제5차 유럽연합행동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유럽연합은 1993년 6월 29일 이사회의 명령(EWG) 제1836/93호로 “환경관리와환경경영심사를위한공동체 시스템에영리기업의자발적참여에관한명령(Die Verordnung Nr.1836/93 des Rates vom 29.juni 1993 über die freiwillige Beteiligung gewerblicher Unternehmen an einem Gemeinschaftssystem für das Umweltmanagement und die Umweltbetriebsprüfung)”을 제정하였다. 이를 축소하여 環境監査命令(EG-Öko-Audit-Verordnung)이라고 하고 있다. 이 명령은 1995년 4월부터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었다.

---

23) (환경감사제도의 다양성에 관하여는 J.Scherer, *aa.O.*, NVwZ 1993, 11(12); Knopp/Striegl, “Umweltschutzorientierte Betriebsorganisation zur Risikominimierung”, BB 1992, 2009(2014)).

24) J.Scherer, *aa.O.*, 12, FN 5 참조.

## 1. 制度의 意義

모든 국가에 공통된 환경법의 중대한 문제점은 집행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전래적 목표와 전통적 장치로써 이러한 환경법의 집행결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위의 환경감사 명령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환경법의 집행결함을 보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환경행정청은 기업에게 자기책임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자기책임을 본질로 하는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국가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과 환경오염원인자에게서도 일어났다. 여기서 기업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과되었다. 즉, 기업은 환경문제의 원인자로서 역할만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25)</sup> 지금까지의 질서법적, 수직적 환경규제방식은 기업의 자기통제에 의하여 보충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질서법상의 부담, 환경부과금, 환경세 또는 행정청의 통제로 기업에게 환경보호를 강요하는 대신에 여론의 감시하에 기업이 자기를 스스로 검사하게 하는 環境自體審査制度의 일환이 環境經營監査制度이다.

기업의 이러한 새로운 역할에 호응하는 제도인 환경자체심사제도하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해결안을 자기책임하에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경영상의 환경보호를 개선하고,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환경보호수준을 넘어서 기업 스스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動因이 부여되어야 한다. 환경자체심사제도는 기업에게 경영상 필수불가결한 환경보호를 자기책임하에서, 자기조직으로 자체통제하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기업자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평가사의 감독을 받고, 행정청과 일반대중에 의하여 제한된 통제를 받는다. 여기서 기업자체에서 실행되는 심사를 内部的 監査라고 하고, 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실행되는 심사를 外部的 監査라고 하여 구분할 수 있다.<sup>26)</sup> 내부적 환경감사인가, 외부적 환경감사인가에

25)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환경법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M.Kloepfer, "Betrieblicher Umweltschutz als Rechtsproblem", DB 1993, 1125 참조.

26)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동안 산업과 법률실무에서 환경심사제도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환경심사제도는 내부적 심사와 외부적 심사로 구분되고 있다. 내부적 심사는 기업내부적 환경보호통제의 장치로서 기업관리에 의하여 투여되는 심사이고,

따라 심사의 목표, 심사의 법적·사실적 조건 그리고 그 결과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기업내부적 환경보호프로그램은 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에 환경자체심사시에 우선 4가지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내부의 환경보호프로그램은 ①환경법적인 관점에서 경영의 합법성을 확정, ②환경위험의 회피와 관리, ③중·장기적 및 예방적 환경통제, ④기업내부적 정보흐름의 개선과 모든 직원의 환경의식을 진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그리고 기업매매시에 환경자체심사는 우선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수용가능한 위험을 분배하게 한다.<sup>27)</sup>

유럽연합명령에 의하면 환경경영감사는 조직, 관리 그리고 절차가 체계적, 정기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방침과 사실상 환경보호실태와 일치여부가 일치적으로 기업내부적 환경경영감사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은 스스로 설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기업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물론 환경심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적 환경감사는 체계적, 환경기술적 그리고 환경법적 경영심사이다. 이 제도는 결국 환경보호조직, 환경보호관리 그리고 환경보호시설이 기업내부에서 작동하는가, 작동하는 경우에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확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 2. 參與方式과 對象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환경심사에 관하여 실무상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절차방식이 있다. 전형적인 방식으로 환경자체심사는 ①준비단계,<sup>28)</sup> ②지역에서 심사단계, ③보도단계로 진행되는 3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외부적 심사는 기업매매의 과정에서 잠재적 구매자에 의하여 또는 구매자의 수탁을 받아 판매되려는 기업이나 기업일부에 실행되는 심사이다.

27) 기업의 매매시에 기업의 환경보호활동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기업이 자기의 소재지에서 어떠한 환경영향을 미치는가? ②기업 스스로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목표가 달성되었는가? ③기업은 관련된 모든 환경법상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④경영책임과 근로자의 작업진행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보장하도록 정향되어 있는가? 등이다.

28) 준비단계에서는 환경자체심사의 목표와 대상범위를 확정하고, 환경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 (1) 자발적 參與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은 기업경영에 대한 환경관련 認證시스템을 제도화 하였다.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의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리행위에 제한하고 있다(Art.1 Abs.1 Audit-VO). 영리행위를 하는 모든 기업은 環境監査制度에 參與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업체와 영업분야뿐만 아니라, 전력 회사, 가스회사, 폐기물소각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따라 기업의 영리행위 이외의 분야에도 環境經營監査制度를 확대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업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인증서는 각각의 지정된 기업소재지에 기초하여 발급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인증서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우선 기업내부적 監査節次(Auditierungsverfahren)를 거쳐서 이러한 절차의 결과를 자격있는 외부의 環境評價士(Gutachter)에 의하여 신빙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외부의 環境評價士에 의한 신빙성이 확인된 이후에 지역의 인증등록부(Standortsregister)에 등록함으로써 관련된 소재지에서 유럽연합의 명령에 규정된 인증마크(Zertifizierungssymbol), 즉 참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일정한 기간의 경과이후에도 이러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매 3년 마다 심사절차와 확인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

처음으로 環境監査節次에 參與하는 기업은 우선 ①기업의 소재지에서 기업의 환경영향확정, ②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문서화, ③앞으로의 환경보호방침, 목표 그리고 실행조치를 확정 이라는 3가지 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對 象

環境經營監査와 認證의 對象은 기업 자체나 유해물배출 시설물이 아니고, 사업체(site), 즉 구체적 所在地이다. 여기서 소재지는 특정된 소재지에서 기업의 통제하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에 귀속되는 원료저장, 부산물, 중간생산물, 최종생산물, 폐기물 및 기업활동분야에 사용된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된다. 즉, 어떤 지역에 영업활동과 영업활동에 귀속되는 모든 물건의 공간적 단위를 여기서의 소재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29)</sup> 環境經營監査의 심사대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歸屬性이 아니라,

운행시설물의 空間的 關聯性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 개의 생산지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러한 여러 개의 생산지는 단일적인 소재지가 아니게 된다. 즉 환경경영감사체제(EMAS)의 참가 단위는 사업체(site) 단위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되는 어떤 지역에 상이한 중소기업의 생산지가 있으면, 다수의 소재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지역은 공간적으로 구분된 지상의 일부이다. 그러나 토지등기부에서 의미하는 토지와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經濟的 土地概念에 의거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토지에 대한 단일적인 경제적 이용이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토지가 어떤 공간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즉 특정된 기업이 생산시설을 포함, 광양 그리고 인천 등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環境監査는 각각의 소재지에서 심사되고, 環境監査에 대한 참여도 기업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재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감사를 하고, 각각에 대하여 環境聲明書를 발한다.

### 3. 企業內部的 監査節次

#### (1) 環境保護方針

환경경영감사에 참가한 기업은 2가지의 의무를 진다. 하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환경법규의 준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경영에서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향상시킬 의무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끈임없는 環境保護義務는 경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현재의 최고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의 환경유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개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상 목표치를 계량화하고, 목표치의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기업의 環境保護方針(Umweltpolitik)에 포함되어야 한다.<sup>29)</sup> 기업의 환경보호방침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차원에서 서면으로 특정된 환경보호방침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그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전체적 목표와 행위원칙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보호방침은 기본원칙, 기준 그리고 지침으로 기업내부적 구속력을 가진 기업목표를 설정하는 企

29) P.Kothe, *Das neue Umweltauditrecht*, 1997, S.27f.

30) 환경개선 의무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Audit-Verordnung 제3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기술의 경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용”은 바로 개선 의무에 한계를 설정한다.

業企劃과 일치한다. 이러한 환경경영감사는 기업의 소재지에서 환경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된다. 환경보호방침은 포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대기, 소음, 물, 폐기물, 토양 등의 모든 환경분야, 자연자원의 절약적 사용과 같은 위험방지, 새로운 생산과정, 생산물의 최종처리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계획, 기업자체의 경영상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하청업자, 자회사 그리고 원료공급자의 환경과 관련된 행위, 종업원의 환경정보와 교육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環境保護方針은 원칙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고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보호방안은 종업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2) 環境審査

### 1) 環境審査의 實行

企業은 소재지와 관련하여 環境審査(Umweltprüfung)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되는 환경심사는 환경에 중요한 모든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이다. 환경심사와 관련된 조사범위는 기업환경방침의 대상범위와 거의 동일하다. 환경성명서에서 확정되고 공포된 결과는 현재상황의 파악으로서 다음의 절차단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환경심사는 기업의 소재지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소재지로부터 기업이 받는 환경영향과 관련된다. 환경심사는 소재지의 상황을 현상태로 수용하는 것이다. 환경심사시에 환경영향분석이 포괄적으로 실시되면 될수록, 필요한 데이터를 빠뜨리지 않고 수집하면 할수록,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시에 소재지에서의 작업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 환경심사는 환경관리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初入審査 또는 初期審査라고 할 수 있다.

환경심사는 기업에 의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매체관련분석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를 실행할 조직, 의사소통 및 조치의 분석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은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설문카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업은 간부 종업원에게 계획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 종업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모든 종업원이 환경심사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이후에 각분야에 중요한 설문카탈록이 전달된다. 이 설문으로 기업의 각분야에서 환경에 관한 특별한 데이터가 상세하게 작성된다.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 데이터는 프로젝트관리자에 의하여 완전하게 분석되

어야 한다. 여기서 확정된 흠결은 경영적 환경보호의 개선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데이터 수입과 병행하여 또는 이와 연결하여 내부적 환경경영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환경경영감사는 현장에서 바로 환경보호의 개선가능성을 목표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외에 폐유수집용기의 결합, 기계에서 오일유출과 같은 기술적 결합의 파악 그리고 종업원이 알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의 실천에 대한 심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경영감사는 환경감사원이 기업의 소재지에서 시각적 인상을 받게 한다. 환경개선에 관하여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 종업원이 경영적 환경보호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점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종업원에 대한 질문으로 확정한다.

개별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의 파악과 평가가 되면, 이러한 정보에서 기업의 환경보호목표가 수립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가는 다음에서 언급되는 환경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다.

환경심사가 기업에 의하여 진지하게 실행되면, 수집된 데이터는 환경보호분야에서 그 기업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러한 취약점의 제거를 위한 개선조치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러한 첫 번째의 점검은 비용절감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미 경제적으로 일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인용되고 있는 경제와 환경의 갈등은 환경관리시스템의 단호한 도입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는 첫 번째 단계로 포괄적으로 실행되는 환경심사가 필요하다.<sup>31)</sup>

## 2) 具體的 內容

환경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①경영적 환경보호를 위한 데이터: i)폐기물의 종류와 양, ii)가스, 소음, 진동, 악취 또는 전자파와 같은 유해물배출(Emission), iii)소비자평가(에너지, 물), iv)유해물의 운송, v)시설물의 데이터, ②경영적 환경보호의 조직구조: i)피라미드형의 조직에 따른 환경보호범위, ii)업무위탁자의 채용, iii)책임성, ③지금까지 실행된 환경개선, ④환경보호법규의 종류와 회사방침의 종류와 준

31) 환경경영감사체계(EMAS)에서는 초기심사(초입심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ISO 14001에서는 필수적인 규격내용이 아니라,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점은 환경경영감사체계(EMAS)와 환경경영체계(EMS)와 출발점에서 차이를 의미하고 환경경영감사체계의 진보성을 의미한다.

수, ⑤제품과 투입성분 그리고 이들의 환경적 영향, ⑥작업방식과 작업진행, ⑦문서화, ⑧의사소통의 길, ⑨종업원의 동기와 관념.

환경심사가 철저하게 실시되면 될수록(즉, 기업의 환경보호취약점은 보다 철저하게 파악되면 될 수록, 기업의 조업방식이 보다 자세하게 지적되면 될수록, 이에 관한 데이터가 보다 자세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후에 목표설정이 더욱더 간단하게 되고, 그 기업에 맞는 작업방식을 더욱더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지시를 더욱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개선을 더욱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무상의 실행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는 준비단계, 실행단계 및 평가단계가 필요하다.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기업의 조직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①최고경영자에 의한 동의와 지지의 보장, ②이사회의 편입, 또는 이사회에 정보제공, ③모든 종업원에 정보제공, ④실행을 위한 팀구성, ⑤필요한 경우에 팀구성원의 교육, ⑥질의목록의 작성 또는 변경, ⑦작업을 위하여 질의목록의 배분.

실행단계에서는 ①개별분야에서 질의목록에 의한 데이터수집, ②다음단계의 확정과 세부계획을 위한 데이터자료의 대강분석, ③경영감사, ④종업원에 대한 질의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①그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취약점, 강점, 조직구조, 작업방식과 작업진행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정보를 평가, ②보고, ③조치를 한다.

### (3) 環境目標와 環境프로그램

#### 1) 環境目標

環境目標는 기업이 경영상 환경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목표이다. 이러한 환경목표는 기업의 모든 관련분야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환경목표는 그 기업의 환경보호방침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실무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經營的 環境保護의 持續的 改善義務가 量的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에 필요한 期間도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환경목표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목표는 바로 기업의 소재지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간의 구체적인 기재는 각각 소재지여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목표는 環境保護方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적 전체목표는 기업의 개별적 분야를 위한 부분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목표는 경영적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

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經營의 自己義務化이다. 환경목표의 양적인 확정은 경영내부에서 기업에게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기업은 다음 감사주기에 - 결국 3년후에 - 환경심사원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목표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다.

환경목표의 확정과 이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의 확정은 최고 경영자와 환경보호수탁인이 한다.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구체화되면 종업원의 지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특정된 테마가 설정되면, 환경보호팀은 환경목표를 개별조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환경목표를 개별조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의사소통이 증대되고, 환경목표의 실현을 업무에 반영하는 동기가 증대된다.

環境目標은 장기적 전술적 환경목표와 중·단기적 세부적 환경목표로 구분되어야 한다. 세부적 환경목표는 결국 장기적 전술적 환경목표로 가는 개별적인 단계이다. 환경부담의 감소를 위한 세부적 환경목표가 설정되기 위하여는 환경개선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목표의 설정과 확정의 토대는 기업의 소재지에서 현재의 환경영향상태에 관한 정보의 분석과 환경보호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2) 環境프로그램

기업은 환경목표의 설정만으로 환경감사의 요건을 실현할 수 없다. 기업은 설정한 환경목표를 어떻게 실현하기를 원하는가를 환경프로그램에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이 環境經營監査에 참여를 결정하면 그 기업은 유럽연합명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환경이용적 관점과 환경보호적 관점이 모두 포괄적으로 조사·파악(소위 환경심사)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현재의 환경상태를 計數化하고 기업경영에서 환경보호의 개선과 관련된 목표확정을 포함하는 環境프로그램을 작성한다. 環境프로그램은 기업의 環境保護方針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것으로, 여기에는 구체적 기업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와 달성을 위한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環境프로그램은 경영적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sup>32)</sup> 환경프로그램은 기업의 소재지에서 목표실현을 위하여 작성되고 수정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모든 업무분야와 모든 영역에서 목표달성에 대하여 책임을 확정하고,

32) P.Kothe, *Das neue Umweltauditrecht*, 1997, S.34.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은 環境프로그램의 작성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을 目錄化(전체목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환경분야에 관련된 행위영향을 평가, 통제 그리고 축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생산과정과 생산계획(디자인, 포장, 운송, 이용 그리고 최종처리)에서의 에너지관리, 원자재의 관리와 절약, 운송, 새로운 생산과정의 선택과 변경을 포함하는 기업자체의 경영상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발주자, 하청업자 그리고 납품업자의 경영적 환경보호도 포함한다. 이러한 척도는 환경방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環境프로그램의 대상이기도 하다. 개별적 업무분야에서 설정된 環境목표달성의 책임자가 이를 정하여야 한다. 신제품 또는 개선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나 새로운 공정과정이나 기존의 공정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環境프로그램도 環境관리프로그램의 세부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개발이나 또는 신제품과 관련하여 작성된다. 여기에는 ①추구된 環境목표, ②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 ③프로젝트진행의 변경시 적용되어야 하는 형식적 절차, ④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시정조치, ⑤이러한 조치의 절차, ⑥특정된 적용사항에 각각의 시정조치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절차가 확정되어야 한다. 環境프로그램의 개발은 결국에 설치되어야 하는 環境管理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개별적인 節次段階는 自己目的(Selbstzweck)이 아니라, 단지 목표달성을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環境프로그램은 기업이 경영적 環境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고려하여 그 기업의 環境보호방침에 도입한 의무이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개념상 동태적인 자기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環境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롭게 작성된 環境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環境프로그램은 항상 현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環境經營監査體制

##### 1) 概 念

環境經營監査體制는 環境보호방침의 확정과 실행을 위한 조직구조, 관할, 절차방식, 형식적 절차, 진행과 수단 등을 포함한다. 環境경영감사체제는 완성된 제품에 대한 기술향상 뿐만 아니라, 생산통합과 생산계획 자체를 環境보

호에 끌어들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소재지에서의 기업의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경영감사체제가 설치되어야 한다. 즉 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의사소통적 활동(정보, 사실기록, 통제, 교육 등)에 관한 조치가 행하여져야 한다.<sup>33)</sup>

환경경영감사체제는 환경관리를 위한 조직에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자세하게 고찰하면 내용적인 요구도 내포하고 있다. 환경경영감사체제는 한편으로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경영조직의 수단적 요건의 설정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경영감사체제는 환경보호방침, 환경목표 및 환경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정기적으로 심사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타 환경과 관련된 책임성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종사자간의 권한과 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영감사체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리대표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충분한 지식수준과 의식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된 조치가 있어야 하고, 환경관련질의와 제안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거래상대방의 원료조달과 공급과 관련되는 제3자를 환경경영감사체제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환경경영감사체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하청업자와 원료공급자도 그 기업의 환경적 요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경영감사체제는 소재지에서 기업활동의 環境影響審査에 대하여 구체적 요구와 이에 대한 문서화를 한다. 이에 의하면 폐수의 배출, 하수시설, 폐기물 그리고 토양의 오염, 여러 가지 자연자원의 이용, 열, 소음, 냄새, 먼지, 진동의 배출 그리고 환경의 특정된 부분과 환경시스템에 대한 시각적 영향과 같은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환경침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 2) 構成要素

조직관련적 심사모형이 환경경영감사체제에서 환경정책적 기업실무의 척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심사모형이 일반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조직모델과 관리시스템의 복잡성과 변화폭, 조직과 인적상황의 교호관계, 환경감사시스템에 참여를 고려하는 모든 기업의

---

33) Audit-VO상 요구되는 선의의 관리자(guten Managementpraktiken)에 관하여는 R.Antes/J.Clausen, "Die guten Managementpraktiken in der EU-Audit-Verordnung", DB 1995, 685ff.



다양한 환경적 관점과 안정적 관점 등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은 대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조직은 결국 각각의 기업에 따라서 특수하게 형성되게 된다.

관단의 문제와 조직구조에 대한 효과있는 영향이 조직이론과 조직실무의 중심적 문제에 속한다. 環境評價士는 평가시에 구체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요구에만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환경경영감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경영상의 조직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객관적인 최소한의 요구에 속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법규와 기술기준은 환경경영감사체제의 도입 여부와 관련없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환경경영체제의 경험에 의할 때 경영조직의 본질적인 요소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관리분야를 포함하는 경영피라미드의 모든 분야에서 업무, 책임, 권한, 명령과 보고계통을 확정하는 구조조직, ②환경상태, 환경법상황, 문서화된 작업지시, 절차기술분야에서 통제절차를 하는 진행조직으로 여기에는 최소한 법률이나 하위법률의 영역에서 운행지시, 안전지시, 작업지시, 여론에 대한 정보의 형식으로 결과의 기록화, 조치계획이 포함되고, ③종업원의 동기부여, 교육 및 훈련, ④표시의무를 포함하는 경영조직의 문서화 ⑤경영조직에 대한 주기적 통제.

### 3) 環境保護的 經營組織

環境經營監査體制는 참여하는 기업에 환경보호에 정향된 구조조직과 추진조직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sup>34)</sup> 환경경영감사법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요구는 개별국가의 환경법에 대한 규율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확정된다.<sup>35)</sup>

34) Feldhaus, "Umweltschutz durch Betriebsorganisation und Auditing", Referat, in: *Dokumentation zur 17.umweltrechtlichen Fachtagung der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am 5. und 6.11.1993 in Berlin*, S.49; J.Scherer, *aa.O.*, 11 ff.(16).

35)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은 경영분야에서 통합적 환경보호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가의 경영상 환경보호는 환경요소와 업무에 정향되어 있는 국가도 있다. 기업의 자체감독에 기여하는 이러한 경영조직의 일부로는 임미시온방지(§§ 53-58 BLmSchG), 하천보호(§§ 21a - 21f WHG), 폐기물(§§ 54, 55 KrW-/AbfG)의 경영수탁인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독일 임미시온법 제58a조 내지 제58d조는 제12차 연방임미시온명령과 결합하여 특정된 시설물의 운영자는 고장시 업무수탁인의 임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임미시온법 제52a조와 자원순환및폐기물

개별국가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경영조직의 문제가 새로운 시의성을 획득하였다면, 허가를 얻어야 하는 시설물의 운영자는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경영조직을 할 법적의무를 지게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적의무는 전체적인 경영진행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법규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sup>36)</sup> 經營組織의 構築은 自己目的이 아니라, 법률상 基本義務의 遵守 또는 達成을 위한 手段이다. 이러한 이유로만 조직의무가 허가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영자는 위험방지 와 사전배려에 관한 환경법적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운영자는 환경보호적 경영조직을 구축하는 경우에만 환경법적인 요구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한에서 운영자가 달성하여야 하는 수단적 의무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에는 신규시설물이나 개수시설물을 환경법규에 합치하도록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구성조직과 진행조직이 있다.

경영조직은 중심적인 조종수단으로서 작업분할적 경영에서 필요한 환경관련적 조치가 적시에 전환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러한 한에서 사실 기능적 경영조직은 시설물운영자의 실질적 기존의무의 준수를 위한 수단적 사전조건이다. 이러한 것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시설물의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

#### 4) 環境經營體制的 經營組織

환경경영체제의 구성부분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環境經營審査(Umweltbetriebsprüfung)이다. 유럽연합의 환경심사명령 [첨부 I.B)에는 환경경영

---

법 제53조는 경영조직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다수인에 의하여 대외적 대표성이 보장된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는 대표권을 가진 기관의 다수 구성원중에서 누가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대표중에서 누가 기업내부적인 업무분담에 합치하여 연방임미시온법 제4조의 의미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운영자를 임명하여야 하는가를 관할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로는 외부관계의 책임도 내부관계의 책임도 변경되지 않는다. 대표, 업무수행 그리고 배상책임은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법에서의 위의 법규정이 기업의 조직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특정된 경영조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권자는 오히려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경영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Feldhaus, "Umweltschutzsichernde Betriebsorganisation", *NVwZ* 1991, 927 ff.(928); Knopp/Striegl, "Umweltschutzorientierte Betriebsorganisation zur Risikominimierung", *BB* 1992, 2009 ff.).

36) Sellner/Schnutenhaus, "Umweltmanagement und Umweltbetriebsprüfung ("Umwelt-Audit") - ein wirksames, nicht ordnungsrechtliches System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NVwZ* 1993, 928 (929); Knopp/Stiegl, *BB* 1992, 2009 (2010); Feldhaus, *NVwZ* 1991, 927 (928f.).

체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요구사항(환경심사를 고려한 경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조직구조/관할: i)최고 관리자차원에서 환경경영방안, 환경목적, 환경프로그램의 확정/현실화, ii)관리대리인의 확정, iii)책임, 권한, 지시계통, 보고통로(관계) 등의 확정, ②경영종사자의 환경경영동기부여/교육: i)동기부여, ii)교육, iii)정보의 흐름(시설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③구성절차와 진행절차: i)환경지위, ii)환경권지위, iii)기록된 작업지시, iv)원료공급자/자회사가 기업의 환경적 요구사항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원료구매와 자회사와 관련된 규율, v)절차기술의 감독과 통제, vi)보조조치, ④증빙서류: i)환경경영방안, 환경목표 그리고 환경프로그램의 포괄적 설명, ii)중요한 과제에서 기능과 책임의 확정, iii)환경목표가 달성된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시스템 요구의 준수를 기록하기 위한 표시부착.

#### (5) 環境經營監査

환경경영방안, 환경심사,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체제가 작성되면, 기업은 이제 環境經營監査(Umwelt-Audit)를 실시하여야 한다. 環境經營監査는 환경보호의 경영조직, 관리 그리고 작업진행이 환경경영방안과 환경프로그램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體系的, 文書的 그리고 客觀的으로 실시하는 管理裝置이다. 환경경영심사의 목표는 기업의 현존하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평가와 경영상의 현실이 환경보호방침과 환경프로그램과의 일치여부와 정도를 확정하는 데에 있다. 환경경영체제의 효과성심사에 기여하며 환경정책과 환경계획의 분야에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달성의 정도)를 심사한다. 이는 관련된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사도 포함된다. 그 결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행위방식에 대한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이외에 環境經營監査는 環境聲明書(Umwelterklärung)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발견하는 데에 기여하고, 경영상 환경보호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는 데에 기여한다. 환경경영감사는 환경경영체제의 핵심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심사는 최소한 3년마다 반복하여야 하고, 감사대상의 복잡성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보다 단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단축감사의 빈도는 기업의 지도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환경경영감사시에 요구되는

사항은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 [부속서 II]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sup>37)</sup>

환경경영감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소재지에서 기업활동의 환경분야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기업상황의 당위와 존재의 비교(Soll/Ist-Vergleich)이다.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 제3d조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環境經營審査(Umweltbetriebsprüfung)도 경영내부적 감사에 속한다. 이러한 심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기업의 종업원이나 외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제4조제1항). 우선 기업은 기업내부에서 내부적 환경경영심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종업원을 발견하여 적합한 형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환경경영심사를 하는 자를 環境監査員(Umwelt-Auditor)이라고 한다. 기업내부에 적합한 인적 자원이 없으면, 외부적 環境監査員(externer Umweltprüfer)이 기업내부적 환경심사시에 조언을 하고 대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적 환경감사원이 환경경영심사를 완전히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환경경영감사를 위탁받은 내부적 또는 외부적 환경감사원은 환경심사분야(초입심사)의 데이터수집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경영감사를 실시하는 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사 이후에 경영심사보고서(Betriebsprüfungsbericht)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기업의 지도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업은 심사결과가 보고된 이후에 필요한 개선을 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수립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최근에 도입된 기업의 소재지에서 이러한 심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환경심사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환경경영감사는 필요하지 않다. 환경경영감사는 이전에 행하여진 과정에서 제도화된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이전에 이미 행하여진 환경정책과 환경프로그램 분야에서 설정된 목표에 관한 심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2번째의 심사진행에서부터 비로소 필요하게 된다. 2번째의 환경심사진행과 기타 모든 환경심사진행에서 유럽연합의 환경심사명령에서 첫번째의 조사로 요구된 환경심사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없다.

환경경영심사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①목표: i)경영체제의 평가, ii)환경보호방안, 환경프로그램, 기업의 소재지와 관련된 해당 환경법규와 일치여부

37) 환경경영심사의 실무에 관하여는 J. Scherer, *aa.O.*, 12.

에 대한 평가, ②심사범위: i)파악된 분야, ii)파악된 주제, iii)고려되어야 하는 환경규범, iv)심사에 의하여 파악된 기간, ③조직과 자원: i) 환경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고, ii)특별한 심사행위를 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iii) (내부적/외부적) 환경심사원이 기업내부에 있거나 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iv)시간과 수단은 범위와 목표에 일치하고, v)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의 최고지도자는 도움을 주어야 하고, vi)내부적/외부적 환경심사원(환경감사원)은 통제하는 행위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④계획과 준비: i)목표달성을 위한 충분한 수단이 이미 확보되어야 하고, ii) 모든 참가자(종업원을 포함하는 하청업체, 원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공급자)는 환경경영심사에서 그들의 역할과 과제를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소재지에서 활동에 대한 신뢰구축, 환경경영체제의 이해, 이전의 환경경영심사와 그 결과의 공유가 속한다. ⑤심사활동: i)조치: 환경경영체제의 전환정도에 대한 분석, 환경경영체제의 취약점분석, 중요한 증거파악, 확인에 대한 평가, 환경경영심사의 확정과 결과에 대한 작업과 보고, ii)행동양식: 동료와 논의/질의, 경영조건과 조달조건에 대한 조사, 기록집에 대한 심사, 소재지의 환경질에 대한 평가, 환경경영체제의 능력/효율성, ⑥확정과 결과의 심사보고: i)경영보고서의 기본적 목표: 파악된 심사범위의 문서화, ii)소재지의 환경보호방침과 현재까지의 달성정도에 대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보제공, iii)소재지의 환경보호진전에 관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보제공, iv)소재지의 환경영향감독에 관한 규율의 효과성/신빙성에 관하여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보제공, v)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⑦경영심사의 결과조치: 환경경영심사의 결과가 전환되어질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작동기능의 존재, ⑧환경경영심사의 빈도성: i)소재지의 환경경영심사의 빈도성은 다음의 척도에 따른다: 행위의 종류, 범위 및 복잡성, 소재지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종류와 범위, 확인된 문제의 의미와 긴급성, 환경문제의 사전문제.

## (6) 環境聲明書

첫 번째의 環境審査와 모든 環境經營監査 후에 기업은 環境聲明書(Umweltklärung)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내부적 환경심사절차는 환경성명서의 작성으로 종결된다(제5조제1항). 환경성명서는 결국 공적인 것으로 확정된다(제5조제2항제1문). 환경성명서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소재지에서 그 기업활동에 관한 서술, ②해당된 기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③유해성분배출 총량, 폐기물발생량, 원자재소비량, 에너지소비량 및 물소비량 그리고 적합한 경우에 소음과 다른 중요한 환경적 관점에 관한 계수화, ④경영적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타의 요소, ⑤해당 소재지에서 환경보호방침, 환경프로그램,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설명, ⑥다음 환경성명서의 제출일자, ⑦허가받은 환경평가원의 성명.

기업은 환경성명서 이외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의무는 없다.<sup>38)</sup> 즉, 環境經營監査體制에 참여하는 기업은 환경성명서에 법률에서 규정된 이외의 환경관련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환경성명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환경평가원은 환경성명서를 무효인 것으로 선언하지 않고, 보충을 요구한다. 심사의 정기적 반복과 관련없이 매년 환경데이터와 발생한 변경사항이 기록되는 간소화된 환경성명서가 작성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간소화가 허용될 수 있다.

환경성명서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재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환경경영감사법을 제정할 당시에 환경성명서의 내용적 깊이와 세부성과 관련하여 기업과 환경단체간에 갈등이 있었다.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에 의하면 환경성명서는 간결하고 이해되기 쉬운 형식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기술적인 서류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소재지의 환경상황을 자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39)</sup> 환경성명서의 적절한 내용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아주 상이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환경영향은 전체 경제적인 의미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관하여 공적인 해명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어떠한 부담을 주는가에 대하여서도 공적인 해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연합의 환경감사명령은 유럽연합의 환경정보준칙이 효력을 발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의 환경정보준칙은 행정청에 있는 기업의 환경정보를 시민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환경경영감사명령은 환경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일반대중이 직접 기업의 환경성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38) 이와 관련하여서는 Sellner/Schnutenhaus, *aa.O.*, 93f.

39) Martens/Moufang, "Kritische Aspekte bei der Durchführung der Öko-Audit-Verordnung", *NVwZ* 1996, 246ff.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유럽연합의 환경정보준칙(Umwel-  
tinformationsrichtlinie)과는 달리 시민은 직접 기업에 대하여 정보요청청  
구권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청구권은 환경성명서의 전달에 제한된다.

環境聲明書의 기능은 관련된 기업소재지에서 기업의 환경행태에 관하여 일  
반 대중에게 보고하고, 환경정책, 환경프로그램 그리고 환경경영체제를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고 2번째의 환경심사진행에서부터 환경정책과 소재지와 관련  
된 환경프로그램이 사실상 보충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충되었는지에 대  
하여 설명되는 데에 있다(제3f조, 제5조). 특히 환경보고서의 기능은 기업의  
소재지에서 각각 프로그램화된 목표의 전환과 비전환에 대한 정도를 일반대중  
에게 알리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성명서는 기업  
의 환경보호행위에 대한 심사와 평가과정에 일반대중을 항상 끌어들이는 장치  
이다. 일반대중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환경보호행위에 끌어들이므로써 環  
境經營監査制度는 환경정향적 관리의 의미에서 자율을 위한 순수한 기업내부  
적 장치로 이해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sup>41)</sup> 일반대중에 대하여 환경경영심  
사의 결과와 환경상황에 관하여 포괄적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  
무를 부여하는 환경경영감사제도는 경제와 일반대중간에 변화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sup>42)</sup>

#### IV. 맺음말

環境經營監査制度와 질서법 간에는 환경보호의 실질적 목표달성이라는 공통  
점이 존재한다. 환경경영감사의 목표는 관련된 모든 환경법규의 준수와 기업  
에 의한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업에 의한 환경보호  
의 지속적 개선은 환경보호수준이 단순히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상으  
로 개선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기업에 의한 환경보호의 지속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수준을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도  
입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환경을 보다 적게 오염시키는 새로운 기술은 끊  
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발전되어 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하는 기

40) 환경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H.Falk/U.Nissen, "Der Inhalt der Umwelterk-  
lä rung nach der EG-Umwelt-Audit-Verordnung", *DB* 1995, 210ff.

41) 이러한 점은 ISO 14000시스템과 비교할 때에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42) Lübke-Wolff, "Die EG-Verordnungen zum Umweltaudit", *DVBl.* 1994, 361 f.

술은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하여야 기업이 비로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곧 기업의 지출을 증대시키므로 기업은 현행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보다 개선된 환경보호를 하는 데에 커다란 관심이 없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새로이 발전된 技術水準을 ‘經濟적으로 인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두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가장 발전된 기술수준’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에 사고시에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는 ‘가장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설비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고, 이는 “연방대기 오염및소음등방지에 관한 법률(Bundesimmissionsgesetz)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연합의 환경경영심사명령은 발전된 기술의 도입을 경제적 수용가능성에 연결하고 있다. 환경경영감사의 중요한 특징인 지속적인 환경경영개선은 環境稅와 제도적으로 결합될 때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기업은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동인이 부여될 때에 환경보호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고, 환경보호방침도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경비는 環境稅에 의하여 충분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sup>43)</sup>

환경심사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규정 이상의 환경보호는 특히 종합적 에너지관리와 관련된다. 즉 종합적 에너지관리는 원료의 관리, 절약, 선택 그리고 수송, 물관리와 물절약, 뿐만 아니라 생산분야에서 제품개발, 포장, 수송, 사용 나아가서 폐기물의 최종처리까지 포함하며, 고객과 원료공급자에 대한 계약체결도 포함한다. 이것은 환경에 적합한 제품개발 이외에 폐기물량의 감소와 통합적 환경보호의 개발에서 발전이 기대될 수 있는 분야이다. 물론 발전된 기술수준에 따라 환경기준을 정하는 것을 개별환경법에 규정하는 경우에 환경경영감사제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환경심사명령(제3a조)에 의하면 지속적인 개선의무는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

43) 환경세의 일환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제도는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폐수의 경우에 방류수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환경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한 제도로서 개별 기업이 방류수기준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게 하는 유인책을 결여한 알맹이 없는 환경세제도가 되고 있다. 환경세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李鍾永, “環境稅의 機能과 效果”, 『環境法研究』 제 19권 (1997), 韓國環境法學會, 75면 이하; 李鍾永, “獨逸의 環境稅 導入 實態와 그 論議에 관한 考察(I)”, 『月刊租稅』 1995/6, 18면 이하 참조.



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종결된다.

環境經營監査에 참가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경영감사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은 추상적 명령일 수 있다. 환경경영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공공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기업의 이미지 이외에 부정적 이미지를 축소시켜 주는 효과도 과소 평가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환경성명서는 일반 대중, 소비자 그리고 행정청에 대하여 그 기업이 환경보호적 기업경영을 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격을 허가받은 環境評價士에 의하여 권위를 갖춘 환경성명서는 일반대중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환경경영감사가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그에 합치하는 기업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국가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환경보호와 상반될 수 있는 점을 환경경영감사제도는 기업의 환경보호적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쟁에 불이익한 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 환경감사에서의 참여는 효과적인 경영 수행장치의 모든 이점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취약점분석, 경영의 최적화, 종업원에 환경보호의 동기부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입증의 간소화 그리고 보험, 신용회사, 원료공급자 그리고 고객에 대하여 계약상의 지위가 강화된다. 환경경영감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환경보호적으로 경영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스템에서 많은 결함이 산재하고 있다. 환경경영감사제도와 ISO 14000시리즈와 같은 환경관리제도는 시스템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면에서 현행의 環境親和企業指定制度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관한 규율형식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다른 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환경경영감사제도의 立法化가 요청된다.